

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
교육위원회 보고자료

www.ssia.or.kr

2016 주요업무보고

2017. 2. .



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
The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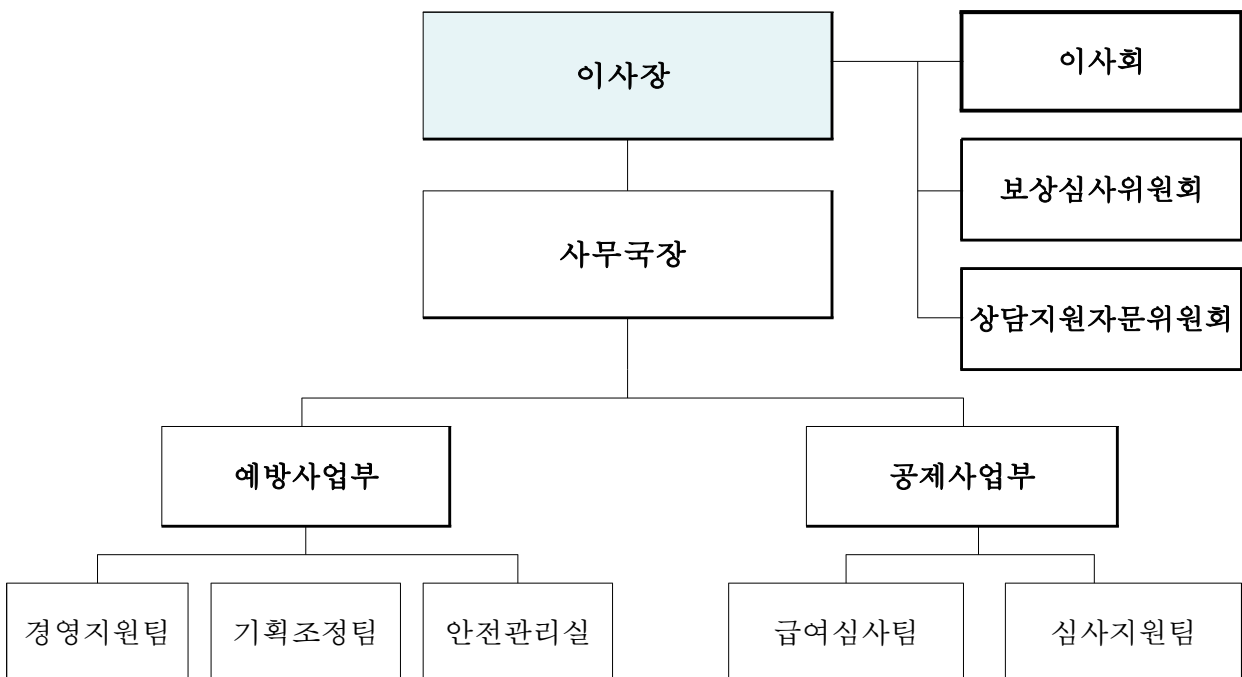
일반 현황

연혁

날 짜	내 용
1987. 12. 09.	「민법」에 의한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설립
1988. 03. 01.	보상업무 개시
2007. 08. 31.	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해산
2007. 09. 01.	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
2007. 09. 03.	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법인 설립등기
2012. 04. 01.	학교폭력피해 지원 개시
2015. 01. 20.	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 신설
2016. 09. 01.	여행자공제사업 개시

조직 및 정·현원

○ 조직



○ 정·현원 ('17.1.31. 현재)

- 특정직 및 일반직

구분	특정직	일 반 직				계
	3급	5급	6~7급	8~9급	소계	
정원	1	2	5	4	11	12
현원	1	1	4	4	9	10

- 계약직

구분	실장	과장	팀장	대리	주임	사원	계
정원	1	3	4	4	5	2	19
현원	1	3	4	3	2	2	15

□ 임원 현황

- 이사장 : 김형태 (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, 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)
- 임 기 : 3년 (2016.09.01. ~ 2019.08.31.)
- 구성현황

구분	학교장	학부모	교수	공무원	변호사	전문의	회계사	기타	계
이사	8	2	1	1	1	1		1	15
감사				1			1		2
계	8	2	1	2	1	1	1	1	17

○ 임원명단

연번	구분	성명	직위	소속	비고
1	이사장	김형태	대표	교육을 바꾸는 새 힘	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
2	이사	황지현	원장	서울진관유치원	서울시교육청 장학사
3	"	유정옥	교장	서울도성초등학교	서울시교육청 장학사
4	"	강희창	교장	경희초등학교	한국 중고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
5	"	서종일	교장	이수중학교	서울국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
6	"	이희철	교장	경신중학교	한국중등축구연맹 이사
7	"	박건호	교장	경기고등학교	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
8	"	조형래	교장	배명고등학교	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
9	"	심규학	교장	서울정애학교	서울시교육청 장학관
10	"	이주선	학부모	성신여자중학교	성신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
11	"	김영애	학부모	서울도봉초등학교	도봉구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활동가
12	"	손준호	변호사	법률사무소 휴먼	서울시 공익변호사단, 노동권리보호관
13	"	김덕원	전문의	녹색병원	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
14	"	김영근	교수	고려대학교	한국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
15	"	이무수	교육행정국장	서울시교육청	공무원
1	감사	장원택	공인회계사	안세회계법인	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
2	"	한창화	정책감사팀장	서울시교육청	공무원

□ 보상심사위원 현황

- 위원장 : 이무수 (교육행정국장)
- 임 기 : 2년 (2015.09.19. ~ 2017.09.18.)
- 구성현황

구분	학교장	학부모	전문의	변호사	보험전문가	공무원	계
인원	3	2	3	2	3	2	15

○ 위원명단

연번	구분	성명	직위	소속	비고
1	위원장	이무수	교육행정국장	서울시교육청	공무원
2	위원	박용식	변호사	세계 법무법인	대표 변호사
3	"	전수민	변호사	서울시교육청	학교생활교육과
4	"	김윤수	교수	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	전문의
5	"	이주민	원장	중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	치과의사
6	"	고용	교수	한양대학교 국제병원	전문의
7	"	최철규	대표	서종 손해사정법인	보험전문가
8	"	박상선	대표	라인-업손해사정법인	보험전문가
9	"	강효선	대표	화승손해사정법인	보험전문가
10	"	이일순	교장	서울불암초등학교	
11	"	서종일	교장	이수중학교	
12	"	김경자	교장	무학여자고등학교	
13	"	임지혜	학교운영위원장	중대초초등학교	학부모 대표
14	"	노명애	학부모 강사	서울시교육청	학부모 대표
15	"	이길환	교육재정과장	서울시교육청	공무원

□ 공제급여 지급 현황

○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구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교육	외국인	기타	계	전년대비 증감율	
2012	건수	640	3,780	3,632	2,850	67	32	10	18	11,029	-
	금액	59,232	1,159,762	1,750,903	1,406,222	45,959	14,344	857	3,926	4,441,205	-
2013	건수	725	3,774	3,865	2,917	65	35	14	32	11,427	3.6%
	금액	67,035	1,077,019	2,352,165	2,426,103	26,281	134,274	7,998	13,471	6,104,346	37.4%
2014	건수	1,026	4,347	4,506	3,437	124	25	16	20	13,501	18.1%
	금액	100,143	1,683,590	1,917,063	2,841,416	37,738	29,853	8,506	6,135	6,624,444	8.5%
2015	건수	1,080	4,305	4,339	3,577	95	27	8	27	13,458	△0.3%
	금액	99,278	945,155	1,871,357	1,751,840	23,375	11,672	1,234	8,830	4,712,741	△28.9%
2016	건수	997	4,378	3,919	3,360	80	22	8	19	12,783	△5.0%
	금액	352,159	1,405,546	1,362,424	1,646,869	19,283	5,742	1,008	9,036	4,802,067	1.9%

○ 2016년도 공제급여 지급 세부 현황

- 총괄 현황

구분	2016년	2015년	비고
건수	12,783건	13,458건	675건(5.0%)감소
금액	48억2백만원	47억1천2백만원	9천만원(1.9%)증가

- 시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(단위: 건, '17.1.1.~12.31.)

구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학교	외국인	기타학교	계
체육수업	146	1,210	1,459	1,331	13	4	2	5	4,170
실험실습	2	24	27	36	2	1	0	0	92
교과수업	401	356	233	161	14	1	2	3	1,171
청소시간	4	21	27	32	1	0	1	0	86
휴식시간	123	1,610	1,270	788	30	5	3	6	3,835
방과후시간	238	779	741	869	12	9	0	4	2,652
기타	83	378	162	143	8	2	0	1	777
계	997	4,378	3,919	3,360	80	22	8	19	12,783

- 장소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(단위: 건, '17.1.1.~12.31.)

구 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학교	외국인	기타학교	계
교 실	463	880	509	375	30	10	2	2	2,271
운동장	177	1,428	1,803	1,687	15	1	4	5	5,120
체육관	104	808	665	668	8	1	2	2	2,258
계 단	38	409	316	233	6	3	0	5	1,010
복 도	93	563	371	173	16	1	0	3	1,220
기 타	122	290	255	224	5	6	0	2	904
계	997	4,378	3,919	3,360	80	22	8	19	12,783

- 유형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(단위: 건, '17.1.1.~12.31.)

구 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학교	외국인	기타학교	계
사 망	1	1	0	0	0	0	0	0	2
장 해	0	2	8	14	0	0	0	0	24
골 절	94	1,278	1,260	833	19	6	2	9	3,501
열 상	515	1,238	766	604	30	5	2	6	3,166
관절염좌	137	826	984	1,239	13	6	3	3	3,211
기 타	250	1,033	901	670	18	5	1	1	2,879
계	997	4,378	3,919	3,360	80	22	8	19	12,783

□ 예산현황

(단위: 천원, '17.1.31. 현재)

세부사업	2017년도	2016년도		증감 (A-B)	증감율 (%)
	본예산(A)	본예산(B)	최종예산		
공제급여	5,617,000	7,620,349	7,620,349	Δ2,003,349	Δ26.3
소송및의료자문료	145,800	145,800	145,800	0	0
보상심사위원회	30,400	0	0	30,400	100
예방사업비	207,800	228,500	228,500	Δ20,700	Δ9.1
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	167,580	0	0	167,580	100
학교폭력피해지원	120,460	108,960	108,960	11,500	10.6
급여	789,733	679,891	679,891	109,842	16.2
수당	139,736	133,650	133,650	6,086	4.6
업무추진비	30,000	30,000	30,000	0	0
일반운영비	365,807	411,304	411,304	Δ45,097	Δ11.0
차기이월금	10,185,342	6,353,185	6,353,185	3,832,157	60.3
계	17,799,658	15,711,639	15,711,639	2,088,019	13.3



운영방향

-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, 여행자공제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하고,
-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을 위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,
- 학교폭력 피해 지원으로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과 함께 학교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,
-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·연구·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·교육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여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정착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.



주요업무 내역

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번호	주요업무명	예산액		집행계획			
		'16	'17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1	공제급여 지급	7,620,349	5,617,000	(연중)			
2	소송 및 의료자문	145,800	145,800	36,450	36,450	36,450	36,450
3	보상심사위원회 운영	30,400	30,400	7,600	7,600	7,600	7,600
4	학교안전사고 예방컨설팅	12,500	14,400	0	7,200	0	7,200
5	교육청연계 사고예방활동	30,000	30,000	0	0	30,000	0
6	학교안전매뉴얼 제작	0	18,000	0	9,000	9,000	0
7	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	60,000	59,500	0	59,500	0	0
8	공제회 사업·기관 홍보	40,000	48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
9	여행자공제사업	16,000	5,000	1,250	1,250	1,250	1,250
10	업무처리지침 개정	0	30,000	0	0	30,000	0
11	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	0	167,580	(연중)			
12	학교폭력피해지원	108,960	120,460	(연중)			

1 공제급여 지급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생 ·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·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
- 지원범위 : 요양급여, 장애급여, 간병급여, 유족급여, 장의비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요양급여	연중	12,500건
장애급여	"	16건
간병급여	"	2건
유족급여	"	2건
위로금	"	1건

추진 계획

○ 요양급여

-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. 다만, 법원의 판결 등으로 「국민건강 보험법」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

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 부담

○ 장해급여

-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

○ 간병급여

-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

○ 유족급여

-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

○ 장의비

-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

추진 일정

- ' 17.1~12월 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공제급여 지급	5,617,000	7,620,349	5,617,000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			
계	5,617,000	7,620,349	5,617,000			

2 소송 및 의료자문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
- 학교안전공제의 운영 등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, 시행령 제21조, 시행규칙 제7조(비용의 보전)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, 명예학교안전요원,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자
- 지원범위 :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손해방지경감비용, 변호사선임료	연중	매월 5건
송무활동비	"	매월 10건
공제급여관련 법률,의료,손해사정자문 등	"	매월 5건

추진 계획

○ 비용의 범위

-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·경감비용 및 긴급 조치비용
-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
-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·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
- 자문 및 소송 업무
 - 공제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법률·의료·손해사정 등의 자문
 - 공제급여의 지급, 보전비용의 지급 등과 관련한 소송 수행

추진 일정

- ' 17.1~12월 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소송 및 의료자문	145,800	145,800	36,450 월20건예상	36,450 월20건예상	36,450 월20건예상	36,450 월20건예상
계	145,800	145,800	36,450	36,450	36,450	36,450

3 보상심사위원회 운영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를 심리·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통하여 피공제자 및 청구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(보상심사위원회)

○ 사업내용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	연중	8회 개최

추진 계획

○ 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결정 기간 준수

-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,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○ 보상심사위원회 구성

-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의 보상심사위원 임명 또는 위촉

○ 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개최

- 심사청구에 따른 문서 수발 및 회의 진행

추진 일정

- ' 17.1~12월 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보상심사위원회	30,400	30,400	7,600	7,600	7,600	7,600
			2회 개최	2회 개최	2회 개최	2회 개최
계	30,400	30,400	7,600	7,600	7,600	7,600

4 학교안전사고 예방컨설팅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교 안전사고의 실질적인 예방에 만전을 기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대상 : 각급학교, 지역교육지원청 중 4개교(기관) 선정
- 방법 : 학교별 사고분석 후 대책 안내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대상 학교(기관) 선정	연중	4개교(기관)
사고자료 분석	"	"
학교(기관) 방문	"	"
성과 분석 및 보완	"	"

추진 계획

○ 대상 학교(기관) 선정

- 희망 학교(기관) 모집 등 별도 기준을 통하여 선정

○ 사고자료 분석

- 학교별·지역별 사고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
-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기법 마련

- 학교(기관) 방문
 - 방문을 통하여 학교(기관)의 실수요의 컨설팅 유형 파악
 -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콘텐츠 및 기자재 지원
- 성과 분석 및 보완
 - 대상 학교(기관)의 만족도 조사 및 학교안전사고 저감 여부 분석

추진 일정

- ' 17.4월 : 사고자료 분석, 학교선정 계획 수립, 방문 계획 수립
- ' 17.5월 : 방문 컨설팅 수행, 예방교육 지원
- ' 17.8월 : 1차 컨설팅 보완, 학교선정 계획 수립, 방문 계획 수립
- ' 17.9월 : 방문 컨설팅 수행, 예방교육 지원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학교안전사고 예방컨설팅	14,400	12,500	0 계획 수립	7,200 6회 방문	0 계획 수립	7,200 6회 방문
계	14,400	12,500	0	7,200	0	7,200

5 교육청 연계 사고예방활동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각 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를 예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내용 확정

○ 추진실적

- 2014 : 학교안전사고 안전수칙 게시물 제작·배송
- 2015~2016 : 학교손상감시체계 정책 연구용역 수행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교육청 협의	연중	
손상감시체계 시범학교 운영 등 계획	"	

추진 계획

○ 교육청 담당부서와의 협의

- 전년도 사업 내용과 연속성이 있는 사고예방사업 전개

- 손상감시체계 시범학교 운영 및 지원 등 예상

추진 일정

- ' 17.1~6월 : 사업 내용 확정 및 부서 협의 완료
- ' 17.7~12월 : 관련 비용 지출 및 사업 경과 확인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교육청 연계 사고예방활동	3,000	3,000	0	0	3,000	0
			계획 수립	협의 완료	비용 지출	경과 확인
계	3,000	3,000	0	0	3,000	0

6 학교안전매뉴얼 제작 [신규]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·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안전매뉴얼을 제작·보급하여 학교안전문화 확산에 일조하고자 함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및 교육감의 안전교육 의무사항에 대한 지원하기 위함
- 학교안전공제회가 처리한 학교안전사고 사안을 바탕으로 기존 안전교육 관련 자료와 차별성을 둔 내용을 담기 위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,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대상 : 각급학교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
- 방법 : 학교안전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컨텐츠 제작 및 계획 수립	연중	600개교, 각 3부
업체선정, 과업지시 및 계약	"	"
매뉴얼 제작 완료 및 배포	"	"

추진 계획

○ 컨텐츠 제작 및 계획 수립

-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부 고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
- 시간별·장소별·원인별 사고 빈도에 따른 사례 분석 정보 제공
- 업체선정, 과업지시 및 계약
 - 효과적인 학교안전교육 자료 구현을 위한 과업 지시
- 매뉴얼 제작 완료 및 배포
 - 교육청과 협조하여 각급학교에서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

추진 일정

- ' 17.5월 : 사례 분석, 제작 계획 수립
- ' 17.6월 : 업체 선정 계획 수립, 업체 선정 및 계약
- ' 17.7월 : 교육프로그램 보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학교안전매뉴얼 제작·배포	18,000	0	0 계획 수립	0 업체선정	1,800 완료·보급	0 성과 확인
계	18,000	0	0	0	1,800	0

7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
-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실현가능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대상 : 유치원 학부모,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
- 방법 :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책자 제작·배송

○ 추진실적

- 2015 : 19만부 제작·배송
- 2016 : 19만부 제작·배송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제작 계획 수립	'17.1월	17만부
업체 선정 및 제작 완료	'17.2월	"
책자 배포	'17.3월	"

추진 계획

- 제작 계획 수립 및 내용 확정

- 공제회 주요사업 안내 : 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,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제도, 여행자공제사업
- 학교안전공제 가입 및 신청절차 안내

추진 일정

- ' 17.1월 : 제작 계획 수립 및 내용 확정
- ' 17.2월 : 업체 선정 및 계약
- ' 17.3월 : 책자 제작 완료 및 배부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학교안전사고 예방컨설팅	59,900	60,000	59,500 사업 진행	0 사업 완료	0 성과 확인	0 성과 정리
계	59,900	60,000	59,500	0	0	0

8 공제회 사업·기관 홍보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교안전공제회 사업 및 기관을 홍보함으로써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설립 취지를 알리고 제도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피공제자의 권익보호를 실현함
-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대상 : 각급학교,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교육계 언론사
- 방법 :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게재, 홍보물 배포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교육언론사 지면 광고 의뢰	연중	4회
홍보 물품 제작 계획 수립 및 실행	"	수회

추진 계획

○ 언론사 지면 광고 게재

- 수익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 도모

○ 기관 홍보 물품 제작

- 학교안전에 관련된 물품 제작 및 배포를 통하여 학교안전문화의 정착과 기관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꾀함

추진 일정

- ' 17.1~12월 : 언론사 지면 광고 게재 (4회)
- ' 17.1~12월 : 학사일정별, 수요자 중심 홍보 계획 실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사업·기관 홍보	48,000	40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
			계획 수립	계획 실행	경과 확인	성과 확인
계	48,000	40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

9 여행자공제사업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실현하기 위함
-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 행정업무 부담 경감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대상 : 각급학교, 교육청 및 관련 기관
- 방법 : 여행자공제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·정산·보상 업무 원스탑 업무 플랫폼 구축

○ 추진실적

- '16 : 여행자공제관리시스템 개설, 계약 업무 진행

사업 홍보를 위한 기관 방문, 회의 참석 등 수행

(2016.07.01.~2016.12.31. 단위 : 건, 원)

구분	건수	금액	비고
유치원	1	134,240	
초등학교	22	3,111,920	
중학교	23	2,181,910	
고등학교	28	4,795,830	
기타	9	2,160,090	특수학교 등
합계	83	12,383,990	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사업 홍보 강화	연중	
공제 상품 및 서비스 개선	"	

추진 계획

- 여행자공제사업 홍보 강화
 -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 및 반성을 기초로 학교,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홍보 계획을 다변화함
- 여행자공제 상품 및 서비스 개선
 - 상품 다양화 및 공제료 인하를 통하여 경쟁력 확보
 - 고위험 활동(익스트림스포츠 등)에 대한 담보 확대 검토

추진 일정

- ' 17.1~12월 : 연중 수시 청약 접수, 사고 보상 및 사업 홍보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여행자공제	5,000	16,000	1,250 홍보·계약	1,250 홍보·계약	1,250 홍보·계약	1,250 홍보·계약
계	5,000	16,000	1,250	1,250	1,250	1,250

10 업무처리지침 개정 (신규)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공제급여 지급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하고 제도의 보완점을 모색하여 공제급여 지급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 최근 학교 안전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동향을 업무처리에 반영하고자 함
- 지침 수립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신속한 보상이 진행되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대상 : 공제급여, 상담지원, 학교폭력피해지원 업무
- 방법 : 연구용역 의뢰 및 내부 검토를 통한 업무처리지침 개정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실무 처리 기준(안) 검토	'17.6월	
연구용역 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계약	'17.6월	
연구용역 진행 및 완료	'17.9월	

추진 계획

- 실무처리 기준(안) 검토

- 공제급여,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, 학교폭력피해지원 업무에 대한 업무처리 개선 방안 내부 검토

- 연구 용역 기관 선정, 계약 및 결과 도입

- 공제제도에 대한 이해, 전문성 등을 고려한 용역 기관 선정 및 연구 용역 수행 관리
- 실제 업무처리에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교육 시행

추진 일정

- ' 17.6월 : 사고자료 분석, 학교선정 계획 수립, 방문 계획 수립
- ' 17.6~9월 : 연구용역 기관 선정, 계약 체결 및 지침 완성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업무처리지침 개정	30,000	0	0	0	30,000	0
			내부 검토	용역 수행	용역 완료	성과 정리
계	30,000	0	0	0	30,000	0

11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(신규)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고자 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

○ 사업내용

- 대상 :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, 그 가족
- 방법 :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, 지원기간의 연장 등 심의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	연중	6회 개최
상담지원담당기관 지정	"	자치구별 2개소 이상(예상)
지원 신청에 따른 심의	"	매월 10건 (예상)
상담지원 비용 지급 등 수행	"	"

추진 계획

○ 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
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

○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담당 기관 지정

-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로 안배하여 지정

- 지원신청에 따른 심의
 - 지원신청, 기간연장신청 등에 대한 심의 진행
- 상담지원 비용 지급 등
 - 지원대상 선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 지급 업무 수행

추진 일정

- ' 17.1~12월 : 자문위원회 6회 개최
- ' 17.1~12월 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상담지원비	167,580	0		167,580		
				(연중)		
계	167,580	0		167,580		

12 학교폭력피해지원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,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기여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
-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급	연중	50건
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지급	"	50건
소송 등 구상 업무 수행	"	10회
법률 자문 수행	"	12회

추진 계획

- 심리상담 및 조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지급

-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이행하는 비용 지원
- 구상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수행
 - 피해학생에게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를 위한 법률 자문 의뢰

추진 일정

- ' 17.1~12월 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7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7	'16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피해지원	120,460	108,960			108,960	
					(연중)	
계	167,580	108,960			108,960	